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43 호 2013. 9. 24(화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13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] 2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813호

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3년 9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공고기간 : 2013. 9. 24. ~ 10. 8.(14일간)
- 변경하는 도로명주소

고지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“별도열람”				

※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 052-241-7585,7586) 및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(고시)일 : 2013. 10. 14.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 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5,758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승달 대상자

연번	고지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변경사유
1	김 운 식	1961. 3. 5.	효문동 47-4	울등1길 1-2(효문동)	울등1길 1-4(효문동)	2004. 1. 5.	건물번호 분할